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나2021468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나20214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0가합5847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수진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임경숙

변론 종결2022. 10. 26.

판결 선고2022. 11. 16.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0가합5847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H이 연대보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확약 중 조건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의 H 이름 옆에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H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 확인서에 피고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B도 날인한 이상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항석

판사공도일

판사오영상